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

매도인(甲) :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

매수인(乙) :

공매부동산 매매계약서

본 공매부동산은 2021년 08월 31일 온비드 및 우리자신신탁(주) 홈페이지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실시한 공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.

매도인(甲)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(삼성동, 20층)

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하, 이창재(지배인 : 김영진)

매수인(乙):

○ 부동산의 표시

물건 번호	소재지	호수	비고	
	경상남도 양산시 중부동 156-4번지 위 집합건물			

- 다 음 -

제1조 (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등)

①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

물건 번호	구분	금액	지급일자	비고	
	계약금				
	잔 금				
	합 계				

- ② Z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계약은 해제되고, 기 납부한 계약금(예금이자 포함)은 甲에게 귀속한다.
- ③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장소는 반드시 아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송금하기로 한다.

[지정계좌 : 부산은행() 예금주 : 우리자산신탁(주)]

제2조 (소유권 이전) ① 乙이 제1조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乙은 甲의

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(말소)에 필요한 서류작성에 즉각 협조하여야 하며, 이를 지연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(권리제한사항 등)은 乙이 부담한다.

- ② 소유권 이전절차에 관한 등록세, 인지대 등 일체의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입찰일 기준으로 입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일까지 공매부동산의 제한권리는 즈의 책임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 즈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.
- ④ 공매부동산 소유권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乙의 책임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.

제3조 (하자 담보책임 및 위험부담)

- ① 乙은 매매목적물의 권리와 현 상태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상세히 조사 검토한 후 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甲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1. 공부 및 지적상의 흠결이나 환지로 인한 감평, 미등기 건물,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구조, 수량의 차이
- 2.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므로 인하여 받는 권리의 제한
- 3. 등기부상 표시내용과 현상의 차이
- 4. 기타 제3자의 권리
- ② 매매목적물의 공용징수, 도시계획의 변경, 건축제한, 도로 편입 등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乙의 부담으로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乙은 하자담보책임, 매도인의 담보책임, 기타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甲에게 묻지 않는다.
- ④ 소유권이전시까지 공매물건에 대한 제한권리(근저당, 가처분, 전세권, 지상권, 가압류, 압류, 유치권등)의 말소 등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는 乙이 인지하고, 매매계약서상 乙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, 乙은 이를 이유로 일체의 이의나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.

제4조 (명도 또는 인도책임)

- ① 명도 또는 인도 책임은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.
- ② 乙은 제1항의 명도 및 인도책임조건에 대하여 甲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.
- ③ 공매부동산에 표시되지 않은 물건(건물, 공작물 및 동산등 일체)과 제3자가 시설한물건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명도, 철거, 수거, 인도 책임 및 비용부담은 乙이 한다.
- ④ 본 계약체결 이후 매매 목적물과 관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들과의 분쟁 및 민원사

항 등은 乙의 책임으로 해결토록 하여야 하며, 그 정리결과를 이유로 甲에게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요구(대금지급의 조정 등)를 할 수 없다.

제5조 (제세금 등) 본 계약의 목적부동산에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등 각종부담금 비용 일체(연체료 포함)는 소유권이전과 관계없이 乙이 부담하기로 한다. 단, 법률에 의거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 중 환경개선부담금, 교통유발부담금,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는 잔금납부일을 기준으로 이전은 甲, 이후는 乙이 부담한다.(잔금납부일 기준으로 甲을 납부의무자로 하는 세금이 부과 전인 경우에는 乙은 甲에게 과세관청에서확인한 예상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.)

제6조 (계약의 해제)

- ① 甲 또는 乙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상대방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② 甲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.
- ③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(가압류,가처분,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)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또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,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甲은 乙이 기 납부한 매매대금을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- ④ 본조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甲의 위약으로 이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甲은 지급받은 매매대금(이자없이 원금)만을 乙에게 반환하고 乙의 위약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甲에게 귀속된다.
-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의 해제(무효)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7조 (변경사항의 신고) 乙은 이 계약 체결 이후 乙의 상호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甲에게 신고하기로 한다. 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乙의 부담으로 한다.

제8조 (부동산거래의 신고)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(시행령, 시행규칙)에 따라, 乙은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,군,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책임지고 해야하며, 미신고 또는 불성실신고에 따른 과태료처분 등 모든 책임은 乙이 지기로 한다.

제9조 (기타사항)

- ①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,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,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,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부동산의 甲을 채무자(또는 제3채무자)로 하는 권리제한사항(가압류, 가처분, 압류등)이 발생시에는 乙이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.
- ③ 입찰참가자준수규칙, 공매공고(안)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.
- ④ 甲, 乙 쌍방 간에 분쟁 발생 시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0조 (권리제한사항)

- ① 2021.06.25. 기준 공매물건 전입세대열람 결과 공매목적부동산 중 401, 501, 601, 604, 701, 801, 802, 901, 902, 1303, 1401, 1503, 1504, 1601, 1602, 1603, 1604, 1701, 1702, 1703, 1704, 1801, 1802, 1803, 1804, 1901, 1902, 1903, 1904호에 우리자산신탁(주)의 동의 없이 전입신고(혹은 무단점유)가 되어 있으며, 2021.06.25. 이후로 우리자산신탁(주)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다. 아울러 본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상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응찰자가 공매응찰 전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조사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(인도및 명도) 및 비용은 응찰자 부담으로 한다.
- ② 공매목적부동산에 압류사항(권리자 : 양산시)이 등기되어 있으며, 이에 대해 乙은 입찰 전 충분히 인지하고, 향후 甲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(단, 지방세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 전에 낙찰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완납한 경우 해당 잔금으로 체납세액 납부 처리함.)
- ③ 공매목적 부동산에 점유권, 임차권, 유치권 등 일체의 권리제한사항이 있더라도 권리제한사항 해결 및 소멸에 필요한 모든 책임 및 비용은 응찰자(매수인) 부담으로 하기로 한다.
- ④ 위 ①항 내지 ③항의 권리제한사항을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해당 권리제한사항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우리자산신탁(주)에 매매계약의 취소, 해제, 해지 또는 매매대금의 감액 및 납부기한 연장 요구 등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.

매수인은 본	계약	내용을	충분히	숙지하고	확인함
매수(<u>) </u>				(인)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21년 월 일

매도인(甲) 성명(법인명): 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이사 이창하, 이창재

(지배인 : 김영진) (인)

주민(법인)번호 : 110111 - 2003236

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(삼성동,20층)

매수인(乙) 성명(법인명): (인)

주민(법인)번호 : 주 소 :

연 락 처:

이 메일: